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가단519991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A

2. B

3. C

변론 종결 2019. 4. 9.

판결 선고 2019. 5.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79,198원 및 그 중 7,738,329원에 대하여,나, 피고 B은 5,386,132원 및 그 중 5,158,886원에 대하여,각 2003. 5. 2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8. 8. 4.까지는 연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1983. 6. 30. 접수 제192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의 답변서 내용은 그 자체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고, 이 법정에서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안성준

청구원인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소외 D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0. 1. 25. 소외 망 E(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망인과의 사이에 소외 망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2,000,000원, 보증기한을 2003. 1. 25.로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00. 1. 25.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2,000,000원, 보증기한을 2003. 1. 25.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3. 주채무의 내용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은 2000. 1. 25. 소외 망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일반주택자금대출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03. 1. 25.로 각 정하여 소외 망인에게 대출하였다.

4.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소외 망인은 2003. 1. 2.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였는 바,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2003. 5. 20.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12,908,876원(보증 원금 12,000,000원 + 이자 908,876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대위변제금의 일부회수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대위변제일 이후인 2003. 6. 30. 11,660원을 원금 상환을 통해 소외 망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액은 12,897,216원(12,908,876원 - 11,660원)이다.

다. 위약금(미수추가보증료)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망인은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손해금 납부와 관리기관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고, 관리기관이 정한 위약금은 피보증인인 소외 망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연 1.0%)을 급하여 산출한 금액인 바, 위 보증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인 2003. 1. 25.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03. 5. 19.까지 115일간의 미이행금 12,000,000원에 대한 위약금을 산정하면 37,800원($12,000,000 \times 10/1000 \times 115/365$, 원이하 버림)이다.

라. 채권보전비용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소외 망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630,173원을 지출하였는데, 100,120원

을 회수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보증으로 인한 채권보전비용잔액은 530,053원(630,173 - 100,120)이다.

마. 지연손해금

(1)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주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2조 소정의 연 20%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그 이행일 다음날인 2003. 5. 2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2) 확정손해금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회수하여 위 보증 대위 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회수금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3. 5. 21.부터 회수일인 2003. 6. 30.까지 41일간의 확정손해금을 위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산정하면 261원($11,660 \times 20/100 \times 41/365$, 원미만 버림)이다.

5. 원고 공사의 권리·의무 승계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6. 상속관계

이 사건의 주채무자인 소외 망인은 2000. 8. 경 사망하였고, 소외 망인의 제1순위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상속분은 5분의 3), 직계비속인 피고 B(상속분은 5분의 2)이 있는 바, 위 소외 망인의 채무를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A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채무는 8,079,198원[(대위변제금 잔액 12,897,216원 + 위약금 37,800원 + 채권

보전비용 잔액 530,053원 + 확정손해금 261원) $\times$ 3/5(상속지분)] 및 그 중 7,738,329원[대위변제금 12,897,216원 $\times$ 3/5(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 B의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채무는 5,386,132원[(대위변제금 잔액 12,897,216원 + 위약금 37,800원 + 채권보전비용 잔액 530,053원 + 확정손해금 261원) $\times$ 2/5(상속지분)] 및 그 중 5,158,886원[대위변제금 12,897,216원 $\times$ 2/5(상속지분)]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3. 5. 2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8. 8.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7. 원고는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284744호로 제기하여 2008. 7. 25.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이행권고결정본이 피고 A, B에게 2008. 8. 4. 송달되고 피고들의 이의 없이 2008. 8. 19. 확정되었던바 있다.

8.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후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구상금채무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미루면서 시효기일을 넘기려고 획책하고 있어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9.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만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C의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이어서 매매예약이 성립한 1983. 6. 30.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 C는 이 사건의 소장접수일 현재까지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이므로 위 기간이 경과한 1983. 6. 30.로 소

열하였다 할 것이다.

10.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부동산의 가액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채권액에도 못미치므로, 위 피고들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C와 소외 망인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은 그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이미 말소되었어야만 할 등기이다. 따라서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목록

1. 익산시 F 임야 2083㎡
2. 익산시 G 임야 1983㎡. 끝.